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O/A 수출팩토링)

중국동업은	:행 서울시섬앞					년	월	일
본인			(인) 또는	서명				
주소								
		_본인은 중국농업은행						
거래´들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	래기본약관(기업용)과	년	월	일에 역	뚜성한 외	국환거래역	뚜정서기

제1조 (적용범위 및 절차)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약정은 은행에서 정한 수출거래에 대해 팩토링 대상 수출거래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매입일로부터 해외입금 예정일까지 6개월 이내인 수출상의 수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 건에 대해 적용합니다. 단, 수출채권의 은행 매입일로부터 해외입금 예정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단 최장 1년이내)에도 수입상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팩토링 대상 수출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팩토링"이라 함은 사후송금방식(O/A 거래 포함)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제4조에 따른 소구 의무가 없는 조건으로 할인, 매입하는 방식의 수출금융을 말한다.
- 2. 이 약정에서 "소구 의무가 없는 조건"이라 함은 대금회수불능이 발생되더라도 본인의 책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상환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매입신청 방법 등)

본인은 사전 설정된 한도 내에서 수출채권에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신청서와 Invoice 등 관련서류를 매입 희망일 2영업일전에 서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본건 팩토링 개별약정 체결을 요청한다.

1

제4조 (소구 의무가 없는 경우)

본건 팩토링과 관련하여 은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 1. 수입상 소재 국가위험(수입국의 외환통제.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전쟁으로 인한 지급불능 등)
- 2. 수입상 신용위험(파산, 부도 등)
- 3. 수입상의 지급거절위험(단, 제5조에 따라 수출상이 부담하는 위험 제외)

〈은행서식 64-2〉

제5조 (소구 의무가 있는 경우)

- 1. 본인은 본건 팩토링과 관련하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수입상의 지급거절위험(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를 포함)을 부담한다.
 - ① 제1조에서 정한 적용범위 및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② 제9조에 따른 진술이 허위이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③ 수입상이 물품 또는 상업송장을 인수하지 않거나, 항변 또는 상계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④ 선적서류 하자로 인한 수입상 지급거절위험
 - ⑤ 선적서류 위조 또는 수출상의 사기(수출계약의무 불이행 포함)
 - ⑥ 수출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수입국 법원의 지급정지 명령에 의한 지급거절 위험
 - ⑦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직접 수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 ⑧ 기타 제4조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제외한 사유로 인한 지급거절위험
- 2. 본인은 본건 팩토링과 관련하여 제4조에서 정한 위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매입 거절 등)

- 1. 은행은 수입상 신용도 악화로 수출채권의 만기 지급이 불확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출채권의 매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 2. 본건 팩토링에 따라 은행이 지급하는 매입대금은 수출채권 액면금액에서 은행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예정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인과 은행 사이에 합의된 팩토링 할인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할인료 및 제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채권양도 통지 등)

- 1. 팩토링 실행 시 본인은 본건 팩토링 대상 수출채권의 양도통지를 수입상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면제할 수 있다.
- 2. 수출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본건 팩토링 대상 수출대금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본인은 본건 팩토링 대상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동 입금액을 즉시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유를 불문하고 수출대금 채권이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될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이를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할 책임을 진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으로의 이체가 불능인 경우 포함) 본인은 이로 인해 은행에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책임지기로 한다.
- 4. 본인은 본건 팩토링 대상 수출채권의 권리행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은행이 지시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면제된 경우 수입상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추후 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해 은행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8조 (사후관리)

- 1. 본인은 수출대금 미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출채권 금액 전액, 지연이자,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이하 "지연 수출대금"이라고 한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연 수출대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 경우 수출상이 부담하는 지연이자,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2. 수출대금 미입금 및 지연입금에 따라 발생하는 입금지연이자,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은 수출상이 부담한다.
- 3. 수출대금 미입금 금액이 매입금액의 10% 이하로서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 본인은 해외 입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미입금 금액을 은행에 납부한다. 이 경우 해당 팩토링 개별약정은 종결된다.

제9조 (진술 및 보장)

본인은 은행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 1. 본인이 제출한 수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 2. 본인이 제출한 수출채권 매입을 위한 모든 선적서류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수출계약서 조건과 일치합니다.

- 3. 본인은 수출계약서 상의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요건 (배서를 포함한다) 및 절차를 완료합니다. 은행이 수출채권 관련 서류 및 부대서류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국내외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없습니다.
- 4. 본인은 당해 '수출팩토링 거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중복하여 자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 5. 본인이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한 이후에는 은행의 사전동의 없이는 결제기한 연장이나, 당해 '수출팩토링 거래'와 관련하여 수입상과 어떠한 조건변경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 6. 최근 수입상의 신용상태악화 등 '수출팩토링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 수입상의 신용상태악화 등 '수출팩토링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행에 알리고, 은행이 동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팩토링 거래'를 하기로 별도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7. 본인은 은행에게 매각한 본건 팩토링 대상 수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입상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업분쟁 발생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은행 앞으로 즉시 통지한다.

제10조 (적용기간)

이 추가약정의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본인은 해지일자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이 약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제11조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은 본인이 본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권)

본인과 은행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문제들은 "국제팩토링협회(Factors Chain International)에서 정한 국제팩토링일반규약(General Rules for International Factoring)", "전자무역업무 표준 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기타 국제적인 규칙과 규정 및 은행의 관련 규정(통틀어 "규칙들"이라 함)을 따릅니다. 규칙들에서 정하지 않은 문제들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고 결정됩니다.

- 1. 이 약정의 내용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2. 이 약정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혹은 외국환거래약정서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약정이 우선합니다.

제13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또는 서명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		(인)또는 서명